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32 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소희・최형두

임종득 • 최수진 • 서천호

김선교 · 김상욱 · 김장겸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.

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,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·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,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·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,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수련기관"을 "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정신건강전문요원 (이하 "정신건강전문요원"이라 한다)은"을 "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"정신건강전문요원"이라 한다)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,"로 한다.

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수련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을 수련기관(이하 "수련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1.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
- 2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 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「자살예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 예방센터,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(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

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 의료기관만 해당한다)

- 가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 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
- 나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 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. 다만,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17조의3(수련기관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평가(이하 "수련기관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·방법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·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

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7조의4(수련기관 지정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제17조의3에 따른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 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 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4.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경우
 -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 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련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기관 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제1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 등) ① -----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 -----제17조의2제1항 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에 따른 수련기관-----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 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 ② -----정신건강전문 요원(이하 "정신건강전문요원" 요원(이하 "정신건강전문요원" 이라 한다)은 그 전문분야에 이라 한다)은 1급과 2급으로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정신 구분하고,------건강간호사, 정신건강사회복지 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하다. ③ ~ ⑧ (생 략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7조의2(수련기관의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 문요원의 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수련기관(이 하 "수련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

기관

- 2.
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

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

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 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 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,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(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)
 - 가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 런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 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
 - 나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 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 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

<신 설>

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것. 다만,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정한다.

제17조의3(수련기관평가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 여 정기적으로 평가(이하 "수련 기관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 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런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 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

<신 설>

- <u>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</u>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・방법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・방법과 제4 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.
- 제17조의4(수련기관 지정취소 등)
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
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
 - 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경우
 - 2.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제17조의3에 따른 수련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

제32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, 시 제32조(청문) ------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 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<u><신 설></u>

2. ~ 5. (생략)

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 청하는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
- 4.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 련기관의 지정취소
- 2. ~ 5. (현행과 같음)